

설비건설업 노무관리 상담 사례 ⑭

신흥식 /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1. 해고통지 방법

Q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적으로 지적을 받자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관리부장이 출근하라고 전화통화를 한 바 있는데 그 후부터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문자메시지와 이메일까지 보내어 출근하던지 퇴사할 마음이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주일 넘게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리하면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자격 상실처리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A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가 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례는 해고사유가 부당하거나 해고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적으로 주의를 받고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징계해고로 다룰 때 징계(인사)위원회 등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징계절차나 소명기회부여에 대한 규정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징계사유 규명이나 귀책사유 발생이유

등에 대한 직원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2007.7.1.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징계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직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 등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해고절차 등의 하자를 치유하여야 합니다.

2.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Q 당사는 설비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로서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 계약을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참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직상수급인)가 시공참여자(하수급인)와 시공참여계약(하도급계약 등)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케 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②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③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공참여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4조)

따라서 공사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자체 수급에 하자가 없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이행한 경우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7.7.27.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시공참여자)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자(전문건설업체)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하수급인(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연대책임을 부과하였던 제도를 강화하여 전문건설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2007.7.28 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직불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직불처리는 '①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불처리 약정을 한 경우 ②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에 국한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직불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7.7.27.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

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와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은 개정 근로기준법 공고일(2007.7.27)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08.2.28)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08.1.1부터 새로운 시공참여계약이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공참여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제도의 도입은 불법적인 시공참여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근로자를 두

텃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과 함께 직불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2008.2.28. 이후 하도급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직불처리에 대한 내용을 공사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불임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형수술하면 마이클 잭슨처럼 된다?

세계 최정상급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정말 '코를 너무 많이 뜯어고쳐서 코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게 뉴욕의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립킨(Pamela Lipkin)박사의 말이다. 법정증언 때 콧속에 집어넣은 보형물이 걸로 드러나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잭슨은 언젠가 영국 TV에 출연해 평생 코만 딱 2번 수술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의사들은 없다. 그의 코를 직접 수술했던 호플린(Stephen Hoefflin)박사도 잭슨이 의사들의 조언을 무시

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성형수술은 마치 마약처럼 횡수가 늘어나면서 중독 증세도 심해진다. 맨 처음 성형수술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2%는 정신적으로 이미 성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끝도 없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 질환에 걸린 것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인류 최초의 성형수술은?

기원전 2100년쯤 인도에서는 범죄자의 코를 잘라내는 잔인한 형벌이 시행되고 있었다. 간음한 사람이나 전쟁 포로는 무조건 코를 잘랐다. 코를 잘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코를 다시 만들어내려 했다. 이때 발달된 것이 현대 성형수술의 원리가 됐던 것이다. 아랍인들은 노예들의 눈꺼풀을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고 각막에 색깔을 넣어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눈 색깔을 바꾸면 노예시장에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부에 칼을 대는 일은 언제나 소름끼친다. 하지만 이렇게 소름끼치는 일을 현대인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일념으로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